22 호

행 정 명 령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부 기관이 지속 가능성 및 탈탄소화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지시

뉴욕주("NYS"또는 "주")는 환경 품질, 건전한 공중 보건, 경제적 번영 및 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의 사용 및 폐기, 에너지의 생성 및 사용은 환경 품질, 공중 보건 및 기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의 정책에는 천연 자원과 환경을 보존, 개선 및 보호하고, 물, 대기 및 토지 오염을 방지하고, 주 거주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와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고 유해 물질의 사용과 유해 물질, 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장려하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의 고형 폐기물 관리 우선 순위에는 고형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료를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정부의 정책에는 지역사회, 특히 소수 민족 및 저소득 공동체의 환경 개선과 해당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불균형한 불리한 환경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의 상품, 서비스 및 기술 조달은 주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선택을 통해 강화되어 운영의 부정적인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는 녹색 조달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의 사용을 통해 환경 관리를 계속 이끌 수 있고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 시설과 재산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확장 할 새로운 기술의 배치를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9 년 7 월 18 일 주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법안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기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법은 주정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기후 행동 위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법 제 7 조는 NYS 기관의 기후 변화 행동을 다루며, 특히 7.1 절은 NYS 기관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평가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법 제 7.3 절은 또한 모든 주정부 기관, 사무실, 당국 및 부서가 환경 보전법("ECL")의 75-0101 절의 하위조항 5 에 따라 확인된 소외된 지역사회의 온실 가스 배출 및 공동 오염 물질의 감축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는 이미 2025 년까지 뉴욕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서비스 사무국("OGS")이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 시설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족시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I. 정의

A. "영향을 받는 기관"은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청을 제외한 모든 사무소 및 부서를 포함하여 주지사가 집행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 또는 부서뿐만 아니라 주지사가 의장, 최고 경영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및

뉴욕시립대학(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이 포함됩니다. 별첨 A 에 있는 목록을 참조합니다.

B. "BuildSmart 2025"는 2015 년 기준으로부터 2025 년까지 현장 에너지 사용량을 11 조 BTU (British Thermal Units)로 줄이기 위해 영향을 받는 기관들의 집단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C. "소외된 지역사회"는 ECL § 75-0111 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부정적인 공중 보건 영향, 환경 오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부담을 지고 특정 사회 경제적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고농도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구성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D. "경량(Light-duty) 차량"은 총 중량이 1 만 파운드 이하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E. "중대형 차량"은 총 중량이 10,000 파운드 이상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F. "신건설"은 사계절 내내 점유하고 있는 5,000 평방피트 이상의 새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G. "자격 계층"은 추가적이고 증분적인 청정 에너지를 뉴욕주 또는 뉴욕주 내의 특정 위치에 전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청정 에너지 표준(케이스 15-E-0302) ( Clean Energy Standard, "CES")의 모든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행정 명령의 날짜 기준으로 이 계층에는 계층 1, 오프라 윈드 및 계층 4 가 포함되지만 계층 2 또는 제로 배출 크레딧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II. GreenNY 위원회

A. 이로써 GreenNY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국(Division of the Budget, "DOB") 국장, 일반 서비스 커미셔너,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 보건부 커미셔너, 경제개발 커미셔너, 교통부 커미셔너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국 커미셔너, 환경시설공단 사장,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사장,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사장, 뉴욕주 기숙사 관리청장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됩니다.

B. 이 위원회는 이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일차적인 기관입니다.

C.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과 대체 인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 위원회는 OGS 커미셔너, DEC 의 커미셔너, DOB 의 커미셔너, NYSERDA 의 사장, NYPA 사장 또는 그들의 지명자가 주도하고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의 일상적 업무는 위원회 업무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 또는 기관 직원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 및 권한 기관의 임원 및 프로그램 직원이 수행합니다.

E.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는 이 명령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F.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또는 지명자) 과반수는 정족수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모든 조치와 권고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G.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분과위원회 또는 작업 그룹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임원 및 프로그램 인력으로 구성된 상임 및 임시 자문 분과위원회 또는 작업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II. 교육, 직원 및 지원

A. 영향을 받는 각 기관은 이 행정 명령을 발령한 후 30 일 이내에 지속 가능성 코디네이터로 근무할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코디네이터에게는 관리 지원이 제공되며 영향을 받는 기관이 이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성 코디네이터는 위원회에 대한 영향을 받는 기관의 연락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영향을 받는 기관은 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지속 가능성 팀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팀은 지속 가능성 또는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환경 정의 문제를 식별, 승인 및 구현하는 데 관여하는 적합한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팀에는 청정 대리 또는 부청장, 부사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이 명령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 업무에 참여하는 다른 영향을 받는 기관 직원 및 지속적인 코디네이터를 위한 교육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IV. 보고

A.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은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은 진행 보고서에 알리기 위해 위원회가 식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위원회는 모든 기관간 데이터 공유 또는 콜렉션에 관한 적용 가능한 NYS 데이터 통제 절차를 준수합니다.

B. NYPA 는 뉴욕 에너지 관리자(이하 "NYEM")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NYEM 은 해당 시설에서 모든 에너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은 에너지 데이터가 NYEM 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을 받는 기관의 운영에 대한 GHG 기준선을 개발합니다.

C.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례 조사를 실시합니다.

1. 각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이 명령에 따라 제공되거나 수립된 지침, 대상 및 목표를 달성한 진행 과정,
2. 조달 사양의 효율성 및 사용,
3. 영향을 받는 기관이 환경 정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착수한 일,
4. 구현된 특정 지속 가능성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와 이 명령의 목표, 목표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율성.

D. 영향을 받는 기관은 위원회가 지정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매년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 위원회는 이 명령 발행 다음 해의 9 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후 매년 주지사에게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이 명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관이 제출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명령의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진행 보고서는 위원회가 만든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V. 면제

A. 이 명령에 따른 특정 대상, 목표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의 면제는 위원회 공동 의장이 부여할 수 있지만, 본 명령의 VII.A 절에 대한 면제는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 최고 경영자 및 예산부 커미셔너와 협의하여 NYSERDA 사장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B. 영향을 받는 기관은 위원회 공동 의장에게 그러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는 기관의 특정 상황 또는 본 명령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VI. 녹색 구매 및 운영

A.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기관이 상품, 서비스 및 기술 조달에 사용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공공 사업 권유 및 계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달 사양(조달 사양)을 개발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2008 년 4 월 24 일 발행된 행정 명령 4 에 따라 지속 가능성 및 녹색 조달에 관한 기관 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on Sustainability and Green Procurement)가 개발, 승인 또는 발행한 조달 사양은 위원회가 수정할 때까지 위원회가 발행한 것처럼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B. 조달 사양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외된 지역사회의 취약한 인구와 거주자를 포함한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
2. 독성 물질의 사용 또는 방출로부터의 위험의 방지,
3. 오염 감소 및 예방,
4.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및 사용, 지속 가능한 제조 및 생산 프로세스
5. 낮은 영향 개발 및 기후 복원력 설계 관행, 건설, 엔지니어링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표준 및 우선순위,
6.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7. 재생 및 제로 배출 자원, 재가공된 부품,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 내용물 사용,
8. 폐기물 감소, 재료 재사용, 재활용성 및 퇴비성,
9. 물 절약,
10. 조달 품목의 품질, 내구성 및 활용성
11. 상품 또는 기술의 수명 주기(즉, 생명주기 평가 또는 기타 공급 체인 영향에 의해 식별되는 바와 같이) 전반에 걸쳐 악영향 최소화,
12. 비용,
13. 확장된 제작자 책임
14.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의 사용 및 조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 또는 해당되는 경우 공용 작업의 조달.

C. 영향을 받는 기관은 기존 계약 하에서 조달할 때 또는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의 조달을 위한 신규 요청 및 계약을 개발할 때 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공 작업 요청 및 계약을 개발할 때 위원회가 승인한 GreenNY 조달 사양을 따릅니다.

D.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기관은 다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승인된 GreenNY 조달 규격에 명시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이 필요한 양식, 기능 또는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2) 승인된 GreenNY 조달 규격에 명시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비용이 경쟁력이 없거나 (3) 승인된 GreenNY 조달 규격에 명시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중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기관은 이 명령의 V 섹션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 위원회는 조달 명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녹색 운영 지침("운영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의 VI.B 절에 제시된 13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F. 위원회는 이 명령의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기관을 제공합니다.

G. 영향을 받는 기관은 영향을 받는 기관의 운영을 영향을 받는 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실제 자산 및 설비에 대해 수행할 때 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H. 위원회는 GreenNY 조달 규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하는 출처, 소수 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체 및 복무 장애가 있는 재향 군인 소유 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I.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기관에 의한 지속 가능한 구매를 위한 기준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VII. 온실 가스 배출 감소

A. 2030 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 사용 가능한 공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전기 생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제외하고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자체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다음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후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CES("적격 시스템")에 따라 자격이 있습니다.

1. 각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우선 NYSERDA 에 의해 제공되는 계산에 기초하여,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자신의 전기 요금에 대해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CES 에 순응하는 상태에 있어서, 적격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청정 에너지의 양을 카운트할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기관은 NYSERDA 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용 가능한 계산(로드 데이터, CES 준수 지불 및 기타 필요한 정보 포함)을 수행합니다.
2. 전력 사용량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 기관의 동작에 전용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온-사이트 또는 오프사이트 적격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가능한 경우, 각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이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요구될 것입니다.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기 부분에 대해 각 영향을 받는 기업은 NYSERDA 및 DPS 와 협의 및 합의하여 CES 의 적격 등급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를 조달해야 합니다.
4. NYSERDA 및 DPS 는 각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이 행정 명령의 제 7 조(A)를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지침 및 요구 사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5.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NYSERDA 와 DPS 는 기후법에 대한 의무적인 진전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이 의무를 조정할 것입니다.

B. 2024 년 1 월 1 일부터 영향을 받는 기관이 허가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신축 공사는 예비 비상 발전 및 프로세스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 화석 연료 연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건물 시스템 또는 장비를 피해야 합니다. 단, 영향을 받는 단체는 가능한 경우 예비 비상 디젤 발전기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 발전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정부 또는 영향을 받는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감시할 것입니다.

C. 영향을 받는 기업은 BuildSmart 2025 프로그램에 설명 된대로 2025 년까지 시설에서 11 조 BTU 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해야 합니다.

1. 각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NYPA 와 협력하여 주 운영을위한 전체 저축 목표의 할당된 부분을 달성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은 마스터 계획, O&M 프로그램 개발, 수요 대응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참여, 서브미터링, LED 조명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수행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BuildSmart 2025 프로그램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2. 2025 년 이전에 위원회는 2025 년 목표를 향한 진전 평가와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남아 있는 추가 기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30 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2030 목표는 기후법에 따라 개발된 주정부의 범위 지정 계획의 최신 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D. 위원회는 그러한 재료에 체화된 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일반 건축 자재에 대한 운영 지침 및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영향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기관이 허가하기 위해 제출한 신축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적응형 재사용 또는 상당한 개조로 구성된 모든 신축 또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체화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설계 팀은 선적, 운송 및 건설 장비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총 구체화된 탄소를 계산합니다.
2. 입찰자는 주어진 건축 자재에 포함된 탄소의 양이 포함된 환경 제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 영향을 받는 기업은 2035 년까지 경형 비응급 차량의 100%를 배출 제로 차량(Zero Emission Vehicles, ZEV)으로, 2040 년까지 중형 및 중대형 차량의 100%를 ZEV 로 보유해야 합니다.

1. 모든 영향을 받는 기업은 위원회와 함께 경량 차량 탈탄소화 계획 및 중형 및 중대형 탈탄소화 계획을 작성하고 파일을 작성합니다. 위원회는 탈탄소화 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관에 기술적인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탈탄소화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 명령의 차량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임시 목표를 포함하는 구매 계획.
    b. 차량에 대한 성공적인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훈련과 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2. 영향을 받는 기관은 이 명령을 발행한지 1 년 이내에 위원회와 함께 이와 같은 경량 차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발행한지 3 년 이내에 위원회에 이와 같은 중형 및 중대형 차량 탈탄소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영향을 받는 기관은 첫 계획이 있은 후 3 년에 한 번씩 경량 및 중대형 차량 탈탄소화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우선순위는 배터리 전기 차량 및 수소 연료 전지 차량 구매에 부여되, 영향을 받는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은 위원회에 의해 특별히 인가된 바와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비상 차량을 운영하는 영향을 받는 기관은 적어도 매년 다양한 ZEV 기술을 평가하고 테스트하여 이러한 차량의 사용 사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영향을 받는 기관은 차량에 대한 ZEV 충전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OGS 와 협의해야 합니다. OGS 는 기관에 지침을 제공하고 ZEV 충전 인프라의 단계적 구현을 조정할 것입니다.
7. 영향을 받는 기관은 주정부 소유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주차 시설에서의 ZEV 충전 인프라 직원의 작업장 충전에 대한 직원의 액세스를 최대화하고 이를 촉진하도록 권장됩니다.

F. 영향을 받는 기관은 최대한 실용적인 범위까지 분배된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저장을 포함시켰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NYPA 와 NYSERDA 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영향을 받는 기관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G. 영향을 받는 기관은 이 행정 명령 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적절한 경우 탄소지침에 대한 DEC 값을 활용해야 합니다.

VIII. 폐기물 감소

A.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기관이 계획을 완료하는 데 사용하는 폐기 전용 계획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은 폐기물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2018-19 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75%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5 년마다 10%의 폐기물 처리 감소.
2.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보고된 폐기물 데이터는 재활용 재료, 퇴비화 가능한 재료 및 기타 유기물, 매립지로 보내진 자재(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포함), 및 특수 폐기물(유해 폐기물 포함) 범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폐기물 전환 계획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합하고 있어야 합니다.
    a.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폐기물 감사 실시 일정 및 폐기물 감사 결과가 폐기물 감축을 촉진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지 여부,
    b.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전환하기 위한 계획,
    c.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모든 사례를 식별하고 직원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거하는 계획 수립 및
    d. 영향을 받는 기업이 2025 년까지 가능한 모든 시설(실행 가능하고 이중 스트림 물질 회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에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혼합 종이 및 혼합 용기(플라스틱, 유리 및 금속)의 하위 범주로 분리하는 이중 스트림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고려.
4. 또한 DEC 에서 제공하는 계획 작성 시 기술 지원.
5. 위원회는 적어도 5 년마다 본 명령의 폐기물 전환 목표를 재평가해야 하며, 위원회가 목표를 갱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기관은 각각이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업데이트된 폐기물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영향을 받는 기관은 폐기물 전환 계획 템플릿을 받은지 1 년 이내에 위원회에 이러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이 명령이 발행된 후 90 일이 경과한 후에, 영향을 받는 기관은 생수 구매에 대한 주정부 기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관이 건강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생수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명령의 V 절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 대해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중 보건 문제 및 기타 적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절은 비상용으로 생수를 구입하는 영향을 받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X. 독성 물질 사용 감축.

A. 영향을 받는 기관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독성 물질 사용 감축 전략을 사업에 통합하고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기관들에게 건강한 건물에 대한 정보, 녹색 청소 및 소독, 통합된 해충 관리 및 녹색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XI. 저영향 개발

A. 영향을 받는 기간은 교란 임계값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는 기업이 허가하기 위해 제출한 신규 건설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모든 빗물 유출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 인프라 개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의 재건과 새로운 조경의 추가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B. 위원회는 EFC 와 협력하여 영향을 받는 기관에 녹색 인프라 개념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C. 기후 리스크 통합

1. 새로운 인프라와 빌딩 프로젝트는 수명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계되고 건설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후 예측 및 적응 전략을 사전 설계 및 예상 운영 및 관리에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방된 공간의 보존은 새롭고 현존하는 건설에서의 기후 위험 완화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기후 예측 및 기후 리스크 개념을 통합하는 지침을 영향을 받는 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3.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은 인프라를 강화하고 자연 기반 솔루션 및 모듈형 인프라와 같은 탄력성 관행으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기회를 평가합니다.

XII. 생물다양성 증진 및 서식지 보호

A. 부동산을 관할하는 영향을 받는 기관은 실현 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생태적 보전을 강화하여 토종 생물의 다양성과 NYS 폴리노미네이터 보호 계획을 지원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고, 기후 복원력과 천연 탄소 저장을 증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뉴욕 자연 유산 프로그램 보존 가이드와 목록에 있는 식물과 관련된 관리 권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경 및 기타 식재 노력과 기타 활동에 토종 식물 이외의 식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기관이 관할하는 실제 특성 상의 침습성 종을 대신하여 조기 발견 신속 응답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주정부 소유의 부동산에 침입한 종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운영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C. 영향을 받는 기관은 다른 퇴치 수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침습성 종을 방제하기 위한 통합적인 해충 관리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D. 모든 영향을 받는 기관은 부동산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용 가능한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와 작업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EC 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기관에 위험에 처한 종과 데이터 도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안내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 영향을 받는 기관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경이나 서식지와 함께 배치하여 토종 수분자 종과 NYS 수분자 보호 계획의 목표를 지원하고 기후 복원력 및 천연 탄소 저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해야 합니다.

XIII. 소외된 지역사회

A. 각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작업의 영향을 낮추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기관이 본 명령에 따라 개발한 계획에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낮아진 환경 영향을 통합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있는 주정부 소유 시설의 재고를 조사해야 합니다.

C. 영향을 받는 기관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전기 냉난방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 및 기타 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영향을 받는 기관이 관할하는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XIV. 혁신적인 솔루션

A.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기업이 환경 발자국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운영의 기후 복원력(완화 및 적응)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술 또는 장비가 영향을 받는 기관 작업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및 장비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XV. 이전 행정 명령의 반복

A. 2008 년 4 월 24 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4 호, 2009 년 5 월 5 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18 호, 2012 년 12 월 28 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88, 그리고 2017 년 6 월 1 일에 발행된 행정 명령 166 호는 이 행정 명령에 의해 취소되고 대체됩니다.

이천이십이년 구월 이십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

**별첨 A – 영향을 받는 기관**

1) AGING- 노인복지관(Office for the Aging)
2) AGM-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3) APA- 애디론댁 공원 에이전시 (Adirondack Park Agency)
4) ARTS- 예술위원회(Council on the Arts)
5) BFSA- 버팔로 재정 안정청(Buffalo Fiscal Stability Authority)
6) BOE-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
7) BPCA- 배터리 파크 시티 관리국(Battery Park City Authority)/공원 보전부(Parks Conservancy)
8) CDTA- 주도 지구 교통청(Capital District Transportation Authority)
9) CELG- 정부 윤리 및 로비 위원회(Commission on Ethics and Lobbying in Government)

10) CENTRO- 센트럴 뉴욕 지역 교통청(Central New York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
11) CIVIL-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12) CPB- Central Pines Barrens 공동 기획 및 정책 위원회(Central Pines Barrens Joint Planning & Policy Commission)
13) CUNY- 뉴욕시립대학(City University of New York)
14) DASNY- 뉴욕주 기숙사 관리청(Dormitory Authority of New York)
15) DCJS- 형사사법제도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16) DEC- 환경 보전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17) DED- 경제 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18) DFS-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19) DHCR-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20) DHR- 인권 부서(Division of Human Rights)
21) DHSES-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22) DMV-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23) DOB- 예산국(Division of Budget)
24) DOCCS- 교정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25) DOH-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26) DOS-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27) DOT-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8) DPS-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29) DVS- 재향군인 서비스 부서(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30) ECFSA- 이리 카운티 재정 안정국(Erie County Fiscal Stability Authority)
31) ECMC- 이리 카운티 메디컬 센터 공사(Erie County Medical Center Corporation)
32) EFC- 환경시설공사(Environmental Facilities Corporation)
33) FCB- 재무 관리 위원회(Financial Control Board)
34) GAMING- 게임 위원회(Gaming Commission)
35) GOER- 주지사의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
36) HESC- 고등교육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37) HRBRRD- 허드슨 강-흑강 규제 지구(Hudson River- Black River Regulating District)
38) HRVG- 허드슨 강 계곡 그린 웨이(Hudson River Valley Greenway)
39) IG-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40) ITS- 정보 기술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41) JAVITS- 뉴욕 컨벤션 센터 운영 공사(New York Convention Center Operating Corporation)
42) JC- 사법 센터(Justice Center)
43) LABOR-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44) LIPA-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45) MNA- 육해군 사무국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46) MTA-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47) NFTA- 나이아가라 프런티어 교통청(Niagara Frontier Transportation Authority)
48) NIFA- 나소 카운티 임시 금융 감독원(Nassau County Interim Finance Authority)
49) NYPA-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50) NYSBA-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51) NYSERDA-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52) NYSIF- 보험 기금(Insurance Fund)
53) OASAS- 알코올중독 및 물질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54) OCFS-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55) 피해자 서비스 사무국 (Office of Victim Services)
56) OGDENSBURG- 오그덴스버그 교량 및 항만청(Ogdensburg Bridge and Port Authority)
57) OGS-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58) OMH-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59) OPRHP-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60) OPWDD-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61) ORDA-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62) OTDA-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63) PERB- 공공 고용 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
64) PORTOSWEGO- 오스웨고 항만청(Port of Oswego Authority)
65) RIOC- 루즈벨트 아일랜드 뉴욕주 운영 공사(Roosevelt Island Operating Corpora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66) RTS - 제네시 지역 교통청(Rochester Genesee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
67) SLA - 알코올 음료 관리청(Alcohol Beverage Control) (주류청)
68) SUNY-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69) TAX- 조세 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 Finance)
70) THRUWAY-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
71) TROOPERS- 주 경찰(State Police)
72) UDC- 도시개발공사(Outreach Development Corporation)
73) UNDC- 유엔개발공사(United Nations Development Corporation)
74) WCB-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75) WCMC-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보건 공단(Westchester County Health Corporation)